

뉴욕대학교 대학원 한인 학생회(NYU KGSA) 회칙

2017년 2월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뉴욕 대학교 대학원에 소속한 대한민국 학생들과 이에 상응한자격을 가진 자들이 이 모임(이하 KGSA: Korean Graduate Students Association)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위한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 회의 위치는 미국 뉴욕 뉴욕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도모
2. 학문과 연구의 상호협력 (장학업무, 정보의 교류, 기자재 구입)
3. 지역사회와 봉사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이 회 회원의 자격은 뉴욕대학교 대학원생과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 (권리)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의무)

1. 회원은 이 회의 회칙과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 회의 집회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부서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정수) 이 회에 다음의 회장단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2인 2.

부회장 1인/2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회계 1인 6. 부회계 1인 7. 감사1인

제8조 (임원의 임무) 회장단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이회를대표하며이회의사무를총괄하고각회의의의장이된다.
2. 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유고시에는부회장중연장자가그직무를 대행 한다.
3. 총무는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집행한다.
4. 서기는 이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며 제반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5. 회계(부회계)는 이 회의 재정 출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회에서 운용하는 재정 상황을 수시로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제9조 (각 부서의 종류) 이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하여다음각부서를둘 수 있다.

1. 학술연구부 2. 친목도모부 3. 지역사회봉사부 4. 홍보편집부 5. 장학부

제10조 (각 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문연구부는 회원간의 학술교류와 회원의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관리한다.
2. 친목도모부는 친교 모임, 기수 별 단합대회지원,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임을 주관하며 물품관리, 다과준비, 기타 모든 친목 활동을 수행한다.
3. 지역사회봉사부는 뉴욕시와 인근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업을 주관한다.
4. 홍보편집부는 각 사업과 관련된 안내문의 제작과 배포 등의 홍보업무와 회지발간 등 편집업무를 주관한다.
5. 장학부는 회원의 장학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임원 및 부장의 자격) 임원은 본 대학 대학원 학생 된 자로서 인격과 학업에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제12조 (지도위원) 이 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와 저명인사 중에서 약간의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3조(입후보자의 선출)

1. 회장 후보의 기본 자격은 본 대학원 학생회를 8개월 이상(9월 개강총회부터 5월 첫째주까지)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임원을 말한다. 단, 이에 상용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기간에 대한 기준을 배제할 수 있다.
2. 회장 후보가 되고 싶은 임원은 자진하여 의사를 밝힌다.
3. 현 임원단이 공개 발언 혹은 무기명 투표로(추천제도는 현 임원단이 사전에 다수결로 정한다) 1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자진하는 임원이 없거나 1명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추천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4. 타의로 추천받은 임원은 선출될 경우 본 학생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면(e.g. 조기졸업) 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1. 선거관리는 현 회장단이 담당한다.
2. 현 임원단(출마자 포함)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후보자들 중 1명에게 투표한다.
3. 최다득표한 후보자는 차기 회장으로, 2위 후보자는 차기 부회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4. 표 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 두 후보자를 두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5. 기타 임원은 차기 회장단이 선출 및 알맞는 부서에 배정한다.

제15조(임원 및 부장의 보선)

1.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잔여의 임기 동안 회장으로 역임하고 기타 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
2. 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기타 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단이 보선 혹은 재정비를 실시한다.

제16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0일까지로 한다.
2. 임원 유고시 보선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차기 임원단이 선출된 후에는 차기 임원단이 대행하고 현 임원단은 인수인계에 임한다.

제18조 (총회)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및개정
2. 임원선출
3.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임원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준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0조 (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운영 및 재정

제21조 (운영) 이 회의 사업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0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재정) 이회의재정은회원의회비와찬조금 및기타수입으로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23조 (회칙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심의를거쳐그의안의요령(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4조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의법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한국표준회의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회의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구성하고 공정, 원만,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결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라 함은 회원 전원이 직접 참가하여 단체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회의체'라 함은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말한다.
3. '평회의체'라 함은 일반 단체 내에 설치된 회의체를 말한다.
4. '회의'라 함은 회의체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5. '회의규칙' (회의법, 회의진행법)이라 함은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규칙을 말한다.
6. '결의'라 함은 회의체에서 회의규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회의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토론자유원칙)
2. 모든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회원평등원칙)
3. 모든 결의는 의사정족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수결의원칙)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단체에 관한 법령, 정관, 규정 등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로서 적용된다.

제5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3. 총회는 정관변경, 단체의대표자이사감사선출, 예산과결산의승인등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4. 단체와 특정회원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조 (의장의 선임 임기 직무 해임)

- 1.의장은 총회가 결의로 선임한다.
- 2.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체를 대표한다.
- 3.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 4.총회는 언제든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의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 1.의장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의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의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청구를 받은 의장은 2주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1주간 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장이 각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5.총회의 소집지는 단체의 주소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어야 한다.

제8조 (의사정족수) 총회는 회의장에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9조 (개회와 폐회) 회의체는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의사 활동을 시작하고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그 활동을 종료한다.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아래와 같다.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의장인사 4. 성원보고 5.전회의록 낭독 6. 보고사항(감사보고 회무보고) 7. 의안심의(결의사항) 8. 폐회선언

제10조 (공개) 회의는 원칙으로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

- 1.의장과 회원은 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2.의안제출자는 의제, 의안의 요지, 제안이유를 갖추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의장은 회순에 따라 의안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4.의안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보조동의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찬반표결 의안은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발언권)

- 1.회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2.회원은이규칙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사람이발언하고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3.의장은 제1 내지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발언 회수와 시간)

- 1.회원은하나의의안에대하여2회에한하여발언할수있다.단제안설명,직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회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회원의 1회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보조동의)

- 1.보조동의는 의안 또는 보조동의 등 다른 동의를 대상동의로 삼아 대상동의의 심의를 보조하는 동의이다.
- 2.모든 보조동의는 회원 1인의 제출과 다른 회원 1인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 3.보조동의로는 1 토론종결 2 연기 3 회부 4 수정동의 등이 있으며서열은열거되어있는 순서와 같다.

제17조 (수정동의)

- 1.수정동의는 의안 또는 보조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경쟁적, 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이다.
- 2.수정의 방식으로는 개별방식으로 삽입, 삭제, 대체와 포괄방식으로 대안방식이

있다.

3.재수정동의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제18조 (회부동의)

- 1.회부동이는 의안을 상설 또는 특설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 2.본회는위원회에보고의시한등지침을내릴수있다.
- 3.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그 명칭, 위원의 수와 그 선출 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4.본회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회부취소의 결의로 그 의안을 반려받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 5.본회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 의안을 동일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제19조 (연기동의) 연기동이는 현재 계류 중의 의안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 제20조 (토론종결동의) 1. 토론종결동이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이다.
- 2.대상동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2인씩의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즉시종결동이를 제출할 수 없다.
 - 3.의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회원은 토론의 즉시종결과 아울러 원안통과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그 밖의 동의) 총회는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동의들(예 보류동의, 재심의동의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진행발언) 의장이 회의진행을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의장에게 적절하게 주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규칙발언, 의안의 병합 또는 분할, 정회, 축조심의, 특청, 일정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등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

제23조 (의사진행발언의 발언허가)

- 1.회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보조동의보다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2.규칙발언, 특청, 일정촉진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회원이 위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발언을 잠시 중단 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고 : 의사진행발언(규칙발언, 의안의 병합 또는 분할, 정회, 축조심의, 일정촉진, 특청SHIP - safety, health, integrity, property)은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부동의에 우선하며, 타인의 발언 중에 제출가능,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1인회원의 제출만으로 의장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항의는 재청을 필요로 하며 회의체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24조 (의사진행발언의 처리)

- 1.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회의체는 의사진행발언의 처리를 마치어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의안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설치)

- 1.총회는 결의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의 수는 3 - 15인 이내로 한다.
- 2.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 (위원회 운영)

- 1.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 2.위원회의 회의는 소규모 회의규칙에 의한다.
3. 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무수정가결, 수정가결, 연기 또는 부결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표결)

- 1.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동의를 그 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 2.표결은 원칙으로 거수에 의한다.

- 3.의장은 사안에 따라 음성, 기립, 투표에 의한 표결, 기타의 표결방법에 의하기로 정할 수 있다.
- 4.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5.표결이 종결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28조 (의사록)

- 1.의장은 서기의 보좌를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서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여야 한다.
- 2.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조 (정관변경)

- 1.정관변경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삼을 경우에는 소집통지의 서면 등에 그 의안의 요령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2.정관변경에는 의사종족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0조 (소규모회의)

- 1.소규모회의체란 재적회원의 수가 12명 이하인 회의체를 말하고 소규모회의란 출석 회원의 수가 12명 이하인 회의를 말한다.
- 2.소규모회의에는 발언의 회수 등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소규모회의에 있어서는 출석 회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즉시 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참조 : 한국표준회의규칙 한국 회의 법 학 회 (Korea Parliamentary Law Institute) www.kpli.net
